

의안 번호	1390	【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9. 6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8.(월)

2. 제안이유

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 추가 및 문구 정비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2조제2항 개정에 따른 조항 문구 정비(안 제2조제6항)
- 나. 「소하천정비법」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시설·전기통신시설·송유관·가스공급시설·열수송시설,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”을 감면 규정 추가(안 제3조제9호)
- 다. 「지방세법」 제197조 삭제(2010. 1. 1.)에 따른 농업소득세 조문 삭제 (안 제5조제3항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2조제2항 및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
- 나. 「지방세법」 제197조(2010. 1. 1. 삭제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소하천정비법」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 및 징수시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수정하고, 같은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,
- 2010. 1. 1부로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.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거법규

소하천정비법

제22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(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·모래·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1.27.>

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6.1.27.>

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·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.>

1. 공용·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
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
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,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,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31.]

소하천정비법 시행령

제15조의2(점용료 등의 감면)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전기공급시설, 전기통신시설, 송유관,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0.10.1.]

지방세법(농업소득세 폐지)

부 칙 <법률 제9924호, 2010.1.1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농업소득세 과세 특례)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지방세법」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